#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2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1. 24.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찰 참여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입찰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붙임6]**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는 **전력거래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서 및 사업내역서의 입찰가격 오기, 제출서류의 미비 및 누락 등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입찰공고 개요

☐ 입찰공고 용량 : **100MW** (발전사업 허가용량 기준)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용량 500kW 이상 설비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광+ESS**

※ ESS단독입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에 연계하는 ESS 설비만 참여 가능

☐ 입찰공고 및 접수기간 : '22년 1월 24일(월) ~ 2월 8일(화) 낮 12:00

※ 접수 마감일 낮 12시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발전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주소)** rps21@kdhc.co.kr

○ **(접수방식)** 메일은 **아래와 같이 제목을 달리하여 총 2통 제출**

※ 입찰가격 사전 노출 방지를 통한 입찰의 공정성 확보 목적

○ **(이메일1 제목)** "OOO발전소 장기입찰 서류 제출(가격)"

○ **(이메일2 제목)** "OOO발전소 장기입찰 서류 제출(서류)"

○ **(접수확인)** 담당자가 정상접수 확인메일 발송예정

※ 제출된 서류의 적합여부나 미비여부가 아닌 수신여부만 안내하므로, 최종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필수

※ **"이메일1", "이메일2"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이메일로 제출시에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Gmail, 한메일, 다음메일은 보안상 이유로 메일 수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토·일·공휴일 제외 24시간내 수신확인메일 미수신시 즉시 유선문의 요망

☐ **제출서류**

○ **(이메일1) [붙임3]의 "입찰참여서(단가제출용)"만 송부**

○ **(이메일2) [붙임4]의 입찰참여서(서류제출용) 및 [붙임1]의 목록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PDF 전자파일로 제출**

※ PDF 파일 1개로 통합하여 제출(선정 후 원본제출)

※ 첨부파일 오류, 출력가능여부 등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

☐ **입찰결과 발표 : '22년 2월 16일(수) 18:00 (예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 **http://www.kdhc.co.kr**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기간 : '22년 2월 18일(금) ~ '22년 3월 17일(목)

## 2 입찰 참여자격

☐ 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득한 설비(임시 발전사업허가증은 입찰 불가)

※ **발전사업허가용량 기준 500kW 이상**

② FIT, RPA 또는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계약 및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에 낙찰되거나 계약체결 중인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태양광모듈을 사용하여야 함

⑤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참여제한 발전소를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입찰 불가). 단, 참여제한 기간이 입찰공고 시작일('22.1.24) 이전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

⑥ 태양광 및 ESS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 전량을 매도하여야 함

## 3 판매사업자 선정 기준

☐ 입찰 참여서 등 제반서류**(붙임 1 참조)**를 구비하여 제출한 사업자 중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입찰 평가기준**(붙임 2 참조)**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 발생 시 아래의 경우를 우선하여 선정함

① 입찰가격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
② 입찰 참여 용량이 큰 순
③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순
④ 연간 예상 REC 매매량이 높은 순
※ 모든 항목이 동일한 경우 우선 접수한 사업자를 선정함



☐ 공고용량과 선정용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고용량을 초과한 최초 낙찰용량까지 포함하여 결정함

☐ 선정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물량에 대한 추가 선정 없음

## 4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 가. 준수사항

☐ 당 입찰에 선정된 입찰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단, 별도로 계약일을 안내한 경우는 그 날짜까지로 함) 당사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계약서 상 계약일이 포함된 발전월로부터 20년(ESS는 15년)으로 함

①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 계약일이 속한 달 이전에 발급받은 REC는 매매계약 대상이 아님

②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 상업운전개시일과 REC발급개시일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입찰가격은 SMP+1REC 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상한가격 152,300원/kWh 이하)**

* '21.12월 한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찰 평균가격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시 **선정된 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계약방식 중 한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음**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가격을 적용
(SMP 기준가격 육지지역 : 81.91원, 제주지역 : 122.95원, 계약단위 : 원)
· 1REC가격은 입찰가격에서 제시된 SMP 기준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주) 가중치는 입찰참여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하여야 함

## 나. 설치 기한의 준수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계통접속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한전 계통접속 지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제출
* 인·허가 문제의 경우,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명의의 공문서 제출

## 다. 설치 용량의 준수

☐ **당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는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에 의거 사용전검사 시 발전사업 허가용량의 90%이상 ~ 110%이하여야 함**

## 라. 설치 규격의 준수

☐ 선정된 발전소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선정된 발전소는 **본 입찰 참여서에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 인버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선정된 발전소는 [붙임4]의 사업내역서에서 제시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델과 다른 제품 사용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단,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은 모델로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함

※‘ 설비 국산화’ 가점을 부여받은 발전소의 경우 제조국은 절대 변경 불가

## 마. 사업의 양도 양수

☐ 선정된 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날까지 발전설비를 타인에게 양도(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의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는 사전동의 후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 필요

## 바. 입찰의 무효

☐ 본 공고내용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입찰자가 사업을 취소한 경우 또는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 타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이중계약)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7항의 각 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본 공고내용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입찰자가 사업을 취소한 경우 또는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 입찰 참여서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 타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27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계약 해제 및 해지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자 귀책의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아. 입찰 참여서 작성 유의사항

☐ 입찰 참여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참여서”를 입찰마감 기한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수정(수정 횟수가 1회 초과시 탈락 처리)**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수정 제출시 이메일 제목 : [수정] ○○○발전소 입찰서류 제출(가격) or [수정] ○○○발전소 입찰서류 제출(제출서류)**

☐ 하나의 발전사업허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중복 입찰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 사업자의 입찰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

☐ 입찰가격은 사업자별 실제 가중치를 무시하고 **가중치 1.0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제시하며, 설비용량은 **kW**로 표기

☐ REC 매매량 산정은 태양광 이용률 14%를 일괄 적용하여 작성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의 가중치를 반영함

※ (참고) 연간 예상 발전량 및 REC 매매량 계산

<table>
<tr><td colspan="2">예상발전량(①)</td><td></td></tr>
<tr><td rowspan="2">ESS 연계 시</td><td>ESS 방전전력량(②)</td><td></td></tr>
<tr><td>잔여발전량(③)</td><td></td></tr>
<tr><td colspan="2">연간 예상매매량</td><td></td></tr>
</table>

## 5 의무이행 준수

### 가. 계약체결의 준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1. 계약 무효화 사항 발생으로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2. 입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입찰자 "입찰참여서"의 연간 예상매매량에 입찰가격에서 기준 SMP(육지 81,910원/MWh, 제주 122,950원/MWh)를 차감한 가격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5** 상당금액으로 함(백원단위 이하는 절사)

※ 입찰보증금 산출(예시)
- 연간 예상매매량이 1,000REC, 입찰가격(SMP+1REC) 135,000원인 경우
- 1,000REC × (135,000-81,910)원/REC × 2.5% × 1.1(부가세) = 1,459,000원

☐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 나. 계약이행의 준수 (계약보증금)

☐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계약보증금은 연간 예상매매량에 계약단가에서 기준 SMP(육지 81,910원/MWh, 제주 122,950원/MWh)를 차감한 가격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으로 함(백원단위 이하는 절사)

※ 계약보증금 산출(예시)
- 연간 예상매매량 1,000REC, 입찰가격(SMP+1REC) 135,000원인 경우
- 1,000REC × (135,000-81,910)원/REC × 5% × 1.1(부가세) = 2,919,000원

☐ 보증기간은 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으로 함



### 다. 참여제한 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에 참여를 제한함

①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예외)

②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의 미이행시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③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을 체결한 자 중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는 **해지(해제)일로부터 3년간**

## 6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자 입찰 참여서」의 구비서류 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 경우는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은 취소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입찰공고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기사업법 등을 따르되, 당사에서 별도로 세부 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7 붙임 서류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입찰 제출서류 목록 1부
②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입찰 평가기준 1부
③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입찰참여서(단가 제출용) 1부
④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입찰참여서(서류 제출용)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끝.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 관련 문의(09:00~11:00, 13:00~16:00)**

**☞ 신사업처 신재생부(☎ 031-8018-6028, rps21@kdhc.co.kr)**

## 붙임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입찰 제출서류 목록

❑ **설비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발전소와 그렇지 않은 발전소를 구분하여 아래 표에 따라 제출서류 제출

| 제출(첨부) 서류 종류 | 구분 | | 설 명 |
|---|---|---|---|
| |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된 발전소 | 미준공 발전소 또는 설비확인서 발급 미완료 발전소 | |
| ① **입찰참여서**(붙임3,4 서식) | ○ | ○ | • 모든 발전소 |
| ② **사업계획서**(붙임5 서식) | ○ | ○ | |
|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6 서식) | ○ | ○ | |
| ④ **입찰보증보험증권** | ○ | ○ | |
| ⑤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설비확인신청서 불인정) | ○ | X | • 설비확인 완료 발전소 |
| ⑥ **사용전검사확인증** (사용전점검확인서 불인정) | X | ○ **(해당 경우)** | • 사용전검사 완료 발전소 |
| ⑦ **개발행위 허가 확인서류 혹은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 X | ○ | • 미준공발전소 또는 설비확인서 발급 미완료 발전소<br>•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한 발전소는 해당 경우에 맞게 제출 |
| ⑧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임시허가증 불인정) | X | ○ | |
|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 X | ○ | |
| ⑩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X | ○ | |
| ⑪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포함)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X | ○ **(해당 경우)** | • 규칙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이용 발전소에 해당하는 경우 |
| ⑫ **건축물 임대차계약서**(임차기간이 계약기간 이상) | ○ **(해당 경우)** | ○ **(해당 경우)** | • 건축물 소유주가 발전사업자와 다른 경우 |
| ⑬ **시설물 확인 서류**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 **(해당 경우)** | ○ **(해당 경우)** | • 규칙 별표1에 따른 기존시설물 이용 발전소 |
| ⑭ **ESS 관련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확인서류**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 ○ **(해당 경우)** | ○ **(해당 경우)** | |
| ⑮ **모듈 제조국 정보** (RPS 종합지원시스템 화면 캡쳐) | ○ **(해당 경우)** | ○ **(해당 경우)** | • 설비국산화 가점 적용시(미준공 발전소는 준공 후 제출) |
| ⑯ **지역주민의 지분참여 증빙서류 일체** | ○ **(해당 경우)** | ○ **(해당 경우)** | • 지역주민이 지분참여한 발전소 |
| 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발급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 **(해당 경우)** | ○ **(해당 경우)** | •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점 대상 발전소 |

* 서류 제출여부 : **(○) 필수서류, (○, 해당 경우) 해당하는 경우 필수제출, (X) 제출 불필요**
*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지역주민 지분참여 증빙서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 13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증빙자료 일체
* **필수서류, 선택서류 등 각 해당사항을 누락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붙임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평가기준

| 구 분 | | 평가 기준 |
|---|---|---|
|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평가<br>**입찰가격(SMP+REC)**<br>상한가격(152,300원)이하<br>주1) 가중치를 무시하고 **가중치 1**을 기준으로 한 입찰가격(SMP+REC) 기입<br>주2) 입찰가격이 **152,300원을 초과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br>주3)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br><br>예시) SMP+1REC = 120,000원일 경우,<br>[(152,300−120,000)÷1,000×2] + 30 = 94.6 |
| 가점 |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도** | ○ 주민참여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br>**구 분** \| <br>가 점 \| <br>주) 참여비율은 자기자본 중 투자한(자본, 현물 등) 비율 |
| | | ○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점 부여<br>- 정부부처에서 발급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제출<br>*「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비국산화** | ○ 태양광 모듈의 국산화<br>- 모듈 전체(100%)를 국산으로 설치시 : 15점<br>주1) 제조국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국산으로 인정<br>주2) 인버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 **합 계** | | |

붙임3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입찰 참여서

| | | | | | |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 표 자 명 | | 대표자 전화 | | | |
| | 담 당 자 명 | | 담당자 전화 | | | |
| | 이 메 일 | | | | | |
| | 주 소 | | | | | |
| 발전소 | 발 전 소 명 | | 발전사업허가번호 | | | |
| | 설치장소 소재지 | | | | | |
| 참여내용 | 태 양 광 입찰용량 | | kW | ESS 입찰용량 | 배터리 | kWh |
| | | | | | PCS | kW |
| | REC 가중치 | 태양광 | | 연간 REC 매매량 | | REC |
| | | ESS | | | | |
| | **사용전검사**(예정)**일** | | 년 월 일 | | | |
| | **입찰가격 (SMP+1REC)** | | **원** | ※ 입찰가격은 SMP(원/MWh)와 REC(원/REC)의 총합으로 기재 | | |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br>2.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필요시)<br>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또는 사용전 검사확인증(해당시)<br>4.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 | | | |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서 구매자와 계약체결하여 해당 발전소에서 발전된 신재생에너지 전량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붙임4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입찰 참여서 (입찰서류 제출용)

| | | | |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 | |
| | 대 표 자 명 | | | |
| | 담 당 자 명 | | | |
| | 이 메 일 | | | |
| | 주 소 | | | |
| 발전소 | 발 전 소 명 | | | |
| | 설치장소 소재지 | | | |
| 참여내용 | 태 양 광 입찰용량 | | kW | |
| | REC 가중치 | 태양광 | | |
| | | ESS | | |
| | **사용전검사**(예정)**일** | | 년 월 일 | |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br>2.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필요시)<br>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또는 사용전 검사확인증(해당시)<br>4.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 | |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서 구매자와 계약체결하여 해당 발전소에서 발전된 신재생에너지 전량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붙임5

# 사 업 계 획 서

## 1. 참여자 및 발전소 개요

| 상호(법인명) | | 대 표 자 | | |
|---|---|---|---|---|
| 발 전 소 명 | | 발전사업허가용량 | | kW |

주) 발전사업허가 용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둘째자리에서 절사)

## 2. 사업현황(준공년월)

| 발전사업허가일(필수) | 사용전검사일(필수) | 설비확인서 발급일(선택)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1)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발전소의 경우 예정일로 기입
(붙임3의 입찰참여서와 날짜가 상이한 경우, 입찰참여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2) 상기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3. 연간예상 발전량 및 REC 매매량

| 예상발전량(①) | | kWh | 용량( kW)×이용율(14%)×8,760hr |
|---|---|---|---|
| ESS 연계시 | ESS 방전전력량(②) | kWh | 배터리용량( kWh)×이용률(70%)×365d |
| | 잔여발전량(③) | kWh | 예상발전량(①) - ESS 방전전력량(②) |
| 연간 예상매매량 | | REC | (ESS연계) [③×태양광가중치+②×ESS가중치]÷1,000<br>(ESS미연계) [① × 태양광가중치]÷1,000<br>(ESS단독) [②×ESS가중치]÷1,000 |

가중치가 확정되지 않은 발전소는 아래 4번 항목에 따른 가중치로 계산

## 4. 발전소 입지(설비확인이 완료되어 가중치가 확정된 발전소는 작성 불필요)

(단위 : kW)

| 입지<br>(가중치) | 건축물<br>이용(1.0~1.5) | 기존시설물<br>이용(1.0~1.5) | 수상태양광<br>(1.5) | 일반부지<br>(0.7~1.2) | 합 계 |
|---|---|---|---|---|---|
| 설비용량 | | | | | |

주1) 발전소가 해당되는 입지를 택일하여 용량 기재
주2)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 5. 사용되는 주요 부품

### 5.1. 태양광 모듈

| 구 분 |
|---|
| 모 델 명 |
| 제조회사 |
| 제 조 국 |
| 출 력(W) |
| 매 수(장) |

주1) 2종 이상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음영란 작성(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주2) 설비국산화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향후 제조국 변경 불가(계약해지 사유가 됨)

### 5.2. 태양광 인버터

| 구 분 |
|---|
| 모 델 명 |
| 제조회사 |
| 제 조 국 |
| 출 력(kW) |
| 매 수(개) |

## 6.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당 가점을 받는 경우에만 작성)

6.1. 주민참여 사업

| 총 사업비 | 자기자본 | 융자 및 지원금 |
|---|---|---|
| | | |

| 성 명 | A | B | C | D | E | F | G | H |
|---|---|---|---|---|---|---|---|---|
| 투자비 | | | | | | | | |
| 참여방법 | | | | | | | | |

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별표2 비고 16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4에서 규정한 증빙 필요

6.2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 협동조합명 | 인가증 발급 정부기관 |
|---|---|
| 예시) ○○○ 협동조합 등 | |

주) 정부부처에서 발급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붙임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배상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이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인)**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 참고 모듈 제조국 정보 (예시)

○ 위치 : RPS대상설비관리 - 설비확인신청목록 - 신청번호 클릭 - 설비구성(태양광)

**설비확인 태양광 신청서(신규)**

신청서 | 설비구성(태양광) | 설비구성(ESS) | 소요자금 | 현장점검 | 온라인 동의 | 첨부파일 | 자가점검

임시저장 > 보완요청 > 신청완료 > 접수 > 검토중 > 확인서발급

공사계획인가/신고 신청일이 20년 7월 1일 이후일 경우, 인버터와 접속함은 반드시 KS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모듈**

| 설비코드 | 모델명 | 제조국 | 제조사 | 출력(W) | 수량(매) | 총설치용량(KW) | 설치면적(㎡) |
|---|---|---|---|---|---|---|---|
| PV-CPM-4-3679 | Q.PEAK DUO XL-G9.3 KR1 450 | 한국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 | | | |
| 합계 | | | | | | | |

**인버터**

| 설비코드 | 모델명 | 제조국 | 제조사 | 출력(KWh) | 수량(매) | 총설치용량(KWh) |
|---|---|---|---|---|---|---|
| PV-LGTI-1-0148 | DSP-3350i-J | 중국 | ㈜디쓰테크 | | | |
| PV-LGTI-1-0035 | DSP-33100K-OD-HV | 한국 | ㈜디쓰테크 | | | |
| 합계 | | | | | | |

**접속함**

| 설비코드 | 모델명 | 제조국 | 제조사 | 대수 | 최대입력전압(V) | 정격전류(A) | 스트링 회로 수 | 일체형 여부 |
|---|---|---|---|---|---|---|---|---|
| PV-PCB-3-0295 | BH-KNCF-10-16 | 한국 | 백현이엔에스 | | | | | |
| 합계 | | | | | | | | |